

#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부동산경매신청취하 등 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
  - 가. 20〇〇. 〇. 〇.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
  - 나. 20 ○ ○ ○ ○ 이 이 이 이 이 집수 제 ○ 호로 경매개시결정 된 20 ○ 타경 ○ 호 부동산경매신청사건에 대한 경매신청취하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의 아버지 소외 망 ◆◆◆는 20○○. ○. ○. 사채업자인 피고로부터 금 20,00 월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매월 2%,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2년 후인 20○○. ○. ○.로 정하였고 그 변제이행을 위해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피고, 채무자를 소외 망 ◆◆◆,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, 채권최고액을 금 30,000,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○. ○.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접수 제○○○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.
- 2. 한편, 당시 원양어업을 하던 소외 망 ◆◆◆는 위 변제기일에 이르러 차용원금 과 이자 모두를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영수증과 근저당권말소확약서를 받아 두 었으나, 추후 사업상 또다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해야 할지 모른다며 원고에 게는 피고에 대해 근저당권말소요청을 하지말고 보류해달라고 하므로 원고는 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.
- 3. 20○○. ○. ○. 소외 망 ◆◆◆는 승선했던 어선의 침몰로 인해 유언조차 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며, 그 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자 피고는 소외 망 ◆◆◆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하겠다 하므로 위 변제증서를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를 빌미로 20○○. ○. ○.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타경○○○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.
- 4. 그런데 원고는 최근 소외 망 ◈◆◆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피고가 작성하여 소 외 망 ◈◆◆에게 교부한 영수증, 근저당권말소확약서를 우연히 찾게 되었는바,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입 중 방 법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1. 갑 제3호증

1. 갑 제4호증

1. 갑 제5호증

차용증서

근저당권설정계약서

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영수증

근저당권말소확약서

## 첨 부 서 류

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1. 송달료납부서

각 1통

1통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

# 부동산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676.5㎡. 끝.

| 관할법원  | ※ 아래(1)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멸시효 | 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<b>^^</b>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부수  |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용    | 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·송달료 : ㅇㅇㅇ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불복절차  | 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및 기 간 | 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등기·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